

문서번호	저출산대책담당관-112979	주무관	다문화가족팀장	저출산대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관
보존기간	년	박경길	이영필	윤기환	11/25 代김태균
결재일자	2011.11.25.				
공개여부	비공개	협 조			
방침번호					

(구)서울의료원 행정재산 사용허가 승인계획

2011. 11. 24

여성가족정책관
(저출산대책담당관)

「(구)서울의료원」 행정재산 사용허가 승인계획

(구)서울의료원(지상3층, 1,124.17㎡)에 대해 (사)한국다문화센터로부터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사용허가 승인 처리하고자 함

I 재 산 현 황

■ 재산개요

- 위 치 : 강남구 삼성동 171-1 (舊 서울의료원)
- 현 황

구 분	면 적	재산가액	비 고
토 지	대지 1,124.17㎡	10,174백만원	개별공시지가 9,050천원/㎡
건 물	연면적 1,124.17㎡	742백만원	건물평가액 660천원/㎡

- 재산관리관 : 저출산대책담당관

■ 추진경위

- 2010.10.28 해비치재단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센터설치를 위한 서울시 무상장소 제공 요청
- 2011.05.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방침 수립(장소제공 및 임대료 지원)
- 2011.06.08 센터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(재원:해비치재단, 운영:(사)한국다문화센터, 장소제공:서울시)
- 2011.07. 서울의료원 건물 사용제한 해소('공용시설보호지구안'에서의 건축물제한시설에 대한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삭제)
- 2011.08.11 센터설치운영을 위한 임대료 지원 계획수립(2012예산반영)

- 2011.08.31 센터 설립을 위한 3자간 상세협약 체결
- 2011.09.26 용도변경(의료시설→교육연구시설)
- 2011.10.21 내부리모델링 공사 실시(11.30완료)
- 2011.11.14 사용허가신청[(사)한국다문화센터→서울시]

II 사용허가 승인

■ 사용허가신청

- 신청자 : (사)한국다문화센터
- 신청근거 :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2조 제1호(각 기관의 협력범위)
- 신청기간 : 2011. 12. 1 ~ 2012. 12. 31
 - 1차 : 2011. 12. 1 ~ 2012. 1. 31
 - 2차 : 2012. 2. 1 ~ 2012. 12. 31
- 사용목적 : 「서울해비치다문화교육센터」 운영

※ 센터개요

- 시설 : 강의실 등 25실
- 인력 : 센터장, 교사 등 17명
- 주요 프로그램 : 7개과정 26개반 360명, 교육비 무료
 - 중도입국자녀 특화교육 : 한국어 교육, 검정고시, 한국문화 및 학교 이해
 - 다문화가족 자녀 : 이중언어교육(중국어, 영어), 특기적성교육
 -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: 취업교육(간병인·베이비시터) 및 한국어 교육

■ 관련 근거(법규)

- 사용허가관련 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
 -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및 31조
 - 사용료 산출관련 근거
 -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
- ※ 근거(법규) 세부 내용 : 첨부 3 참조

■ 사용허가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

-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설치를 위해 해비치재단의 운영비(12억/월1억) 지원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운영, 서울시의 무상장소 제공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
- 또한 급증하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생활정착과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하고, 특히 민간자본 활용으로 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
- 그러나,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은 i)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, ii)무상장소 제공에 대한 근거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동 센터는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유상사용 허가를 함
- 다만, 당초 서울시가 무상장소 제공한다는 협약서 이행을 위하여 사용료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 운영기관에 지원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, 2011년도 12월 사용료는 해비치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함

■ 사용허가 승인조건

- 승인대상 : 강남구 삼성동 171-1 (구) 서울의료원 - 3층 1,124.17㎡
- 사용목적 : 「서울해비치다문화교육센터」 운영
- 기 간
 - 1차 : 2011. 12. 1 ~ 2012. 1. 31
 - 2차 : 2012. 2. 1 ~ 2012. 12. 31
- 사용료 여부 : 유상

○ 사용료 : 347,300,600원

- 산출내역

【 1차(2개월) : 2011. 12월, 2012. 1월분】 - 53,430,870원

- 토지 : $(1.124.17\text{m}^2 \times 100/50 \times 9,05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4 \times 1/12) \times 2\text{개월} = 42,390,580\text{원}$
- 건물 : $(1.124.17\text{m}^2 \times 66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12) \times 2\text{개월} = 6,182,940\text{원}$
- 부가가치세 : 4,857,350원

【 2차(11개월) : 2012. 2 ~ 12월】 - 293,869,790원

- 토지 : $(1.124.17\text{m}^2 \times 100/50 \times 9,05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4 \times 1/12) \times 11\text{개월} = 233,148,190\text{원}$
- 건물 : $(1.124.17\text{m}^2 \times 660\text{천원} \times 50/1000 \times 1/12) \times 11\text{개월} = 34,006,170\text{원}$
- 부가가치세 : 26,715,430원

○ 허가조건 : 첨부 2 “허가조건” 준수 · 사용

- 첨부 1. 도면(항공사진, 현장사진, 위치도) 1부.
2. 허가조건 1부.
3. 관련 근거(법규) 1부. 끝